

제 호

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 :
2. 법인등록번호
3. 대 표 자 :
4. 생년월일 :
5. 소 재 지 :
6. 사업내용(변경) :
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4항과 같은
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이 되
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

직인